

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32호 2022. 7. 20.(수)

입 법 예 고

고성군 공고 제2022-1252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2

고성군 공고 제2022-1253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4

고 시

고성군 고시 제2022-13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사천강(상)1교 재가설) 21

고성군 고시 제2022-13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영천강 봉밭1교 재가설) 22

고성군 고시 제2022-135호 고성군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 23

고성군 고시 제2022-136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27

회 람									
--------	--	--	--	--	--	--	--	--	--

발행: 고성군, 편집: 군정혁신담당관(670-2642, 행정 2642)

고성군 공고 제2022-1252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7. 20.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 가. 화장장 공사 등으로 인한 화장 중지시 군민 비용부담 경감 및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나. 행정안전부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료 일시 납부 용어를 삭제하여 규제완화
- 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자에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를 추가하여 증증자의 이웃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관리비 일시 납부 용어 삭제(안 제7조)
- 나.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안 제8조)
- 다. 화장장 사용료 지원 조항 신설(안 제9조)
- 라. 사용대상의 제한 조항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2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복지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장사행정 담당자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 2) 전화: (055)670-2603, 팩스: (055)670-260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1)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장사행정담당 [전화: (055)670-2603]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를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계속해서 군에 주소(주민등록 거주지)”를 “계속하여 군에 주소(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외 거주자”를 “관외거주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내 거주자”를 “관내거주자”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사용료를 사용신고 시 미리”를 “사용료 등을 사용신고 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사용료의 감면 등)”을 “(사용료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사망자가 다음”으로, “사람이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법정리 주민(주민등록 거주자)”을 “법정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이 경우 관내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9조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화장장 사용료 지원) ① 군 화장장이 시설공사 등으로 가동할 수 없어 고성군민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의 우선순위는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용료는 고성군민이 별표 2에 따른 관내사용료를 초과하여 납부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별표 2에 따른 관외사용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9조의2(화장장 사용료 지원 제외)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3.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제2항 중 “협약” 을 “계약”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화장장 사용료 지원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사용신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 자 하는 사람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u>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p>	<p>제4조(사용신고) ----- ----- --- <u>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서 삭제></u></p>
<p>제5조(사용자 범위) ① (생략)</p> <p>② 공설묘지의 사용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u>계속해서 군에 주소(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사람으로 한다.</u></p> <p>③ <u>관외 거주자</u> 중 공설묘지의 사용은 등록기준지가 공설묘지 소재지 법정리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p> <p>④ (생략)</p> <p>⑤ 관내에서 발생한 행려자·무연고 사망자·무연고 개장유골은 <u>관내 거주자에</u>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제5조(사용자 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계속하여 군에 주소(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u>-----.</p> <p>③ <u>관외거주자</u> -----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관내거주자</u>-----.</p>
<p>제7조(사용료 등) ① (생략)</p> <p>② 장사시설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u>사용료를 사용신고 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묘관리비는 15년분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u></p>	<p>제7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사용료 등을 사용신고 시</u> ----- ----- <u><단서 삭제></u></p>
<p>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u>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u></p>	<p>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u>사망자가 다음 -----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u>-----.</p>

- 1. (생 략)
- 2. 50퍼센트 감면
 - 가. 공설묘지 소재지 법정리 주민
(주민등록 거주자)

나.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 1. (현행과 같음)
- 2. -----
 - 가. ----- 법정리에 주소
를 둔 사람
 - 나. (현행과 같음)
 - 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장
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
자. 이 경우 관내 주소
를 둔 사
람에 한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화장장 사용료 지원) ① 군 화장
장이 시설공사 등으로 가동할 수 없
어 고성군민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사망한 날을 기준으
로 1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소
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의 우선순
위는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용료는
고성군민이 별표 2에 따른 관내사용
료를 초과하여 납부한 비용을 말한
다. 다만, 별표 2에 따른 관외사용료
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9조의2(화장장 사용료 지원 제외) 제9
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지
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 · 제10조 (생 략)

제11조(관리 · 운영의 위탁 등) ① (생 략)

② 위탁 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생 략)

제12조(사용대상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군 관할구역 밖에서 각종 개발행위 등의 사유로 발굴된 무연분묘의 개장유골인 경우
2. 군 관할구역 밖의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된 적출물 등
3.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3.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10조 · 제11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제12조(관리 · 운영의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계약-----.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가. 관련 조문: 안 제9조(화장장 사용료 지원)
- 나. 비용발생 요인: 군 화장장이 시설공사 등으로 가동할 수 없어
고성군민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
위에서 화장장 사용료 지원
- 다. 소요예산: 6기 * 350,000원 * 3일 = 6,3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의 개정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는 연간 6,300천원으로 예상
되며, 수반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장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 15., 2020. 4. 7.>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장·간장·췌장·심장·폐

나.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골수·안구

다. 뼈·피부·근육·신경·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팔 또는 발·다리

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

마.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

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공고 제2022-1253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7. 20.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조례 정비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설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장장 사용료 지원 조항 신설(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2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복지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장사행정 담당자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 2) 전화: (055)670-2603, 팩스: (055)670-260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1)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장사행정담당 [전화: (055)670-2603]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고성군 규칙 제 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화장장 사용료 지원)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 외 다른 지역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화장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1개월이상 거주사항 포함)
 2. 사망자 및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화장증명서
 4. 화장장 사용료 납부영수증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화장장 사용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화장장 사용료 지원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6조(화장장 사용료 지원)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 외 다른 지역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화장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1개월 이상 거주사항 포함) 2. 사망자 및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화장증명서 4. 화장장 사용료 납부영수증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화장장 사용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화장장 사용료 지급대장

연 번	사망자							신청인					화장 비용 (천원)	지원 금액 (천원)	지급 은행	계좌 번호	비 고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주소	사망 일자	화장 일자	화장 시설명	성명	생년 월일	성별	관계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고시 제2022-13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 7. 12.

고 성 군 수

1. 허가번호 : 고성2022-07호
2. 하천의 명칭 : 사천강(지방하천)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기관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명 : 고성군(건설과장)
 - 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점터마을 진입을 위한 사천(상)제1교 재가설사업에 따른 교량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 위치 : 고성군 상리면 동산리 574번지 일원
 - 면적 : 315㎡(영구점용 103㎡, 일시점용 21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영구점용 : 2022년 07월 12일 ~ 영구
 - 일시점용 : 2022년 07월 12일 ~ 2023년 12월 31일
7. 문의처 : 고성군청 건설과 하천관리담당(☎055-670-2763)

고성군 고시 제2022-13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 7. 12.

고 성 군 수

1. 허가번호 : 고성2022-08호
2. 하천의 명칭 : 영천강(지방하천)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기관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명 : 고성군(안전관리과장)
 - 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농경지 진입을 위한 노후된 위험교량 재가설에 따른 교량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 위치 : 고성군 상리면 동산리 624번지 일원
 - 면적 : 1,012㎡(영구점용 265㎡, 일시점용 74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영구점용 : 2022년 07월 12일 ~ 영구
 - 일시점용 : 2022년 07월 12일 ~ 2023년 12월 31일
7. 문의처 : 고성군청 건설과 하천관리담당(☎055-670-2763)

고성군 고시 제2022-135호

고성군 농어촌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고성군 농어촌 빈집정비계획 및 관련 도서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2. 7. 20.

고 성 군 수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고성군 농어촌 빈집정비계획

나. 계획목적: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의 기본 방향’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 수립

다. 주요내용

-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 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자원조달계획
-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6) 그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 계획범위

- 1) 계획기간: 기준연도 2022년, 목표연도 2026년
- 2) 공간적 범위: 고성군 농어촌지역

마. 계획의 법적 근거: 「농어촌정비법」

2. 빈집실태조사 결과

가. 실태조사 결과

1) 빈집 등급별 현황 (단위 : 호,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합 계
현황	138 (14.6)	252 (26.7)	350 (37.1)	203 (21.6)	943 (100.0)

2) 빈집 유형별 현황: 모두 단독주택(943호)

나. 빈집정비계획 대상 빈집 현황

1) 빈집 등급별 현황

(단위 : 호,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합 계
현황	136 (14.7)	251 (27.2)	344 (37.2)	193 (20.9)	924 (100.0)

2) 빈집 유형별 현황: 모두 단독주택(924호)

3. 빈집정비계획

가. 빈집정비계획의 구상

1) 빈집정비계획의 비전 및 목표

가) 비전: 함께 나누는 정주, 풍요로운 고성

나) 계획목표

- 빈집정비를 통한 주거복지 향상
- 주거지 정비를 통한 안전한 마을
- 생활 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

2) 추진전략

가) 등급별 전략

- 특정빈집(3·4 등급) 안전조치 및 관리, 철거 정비지원사업
- 일반빈집(1·2 등급) 민간의 자발적 정비 유도, 기능 재활용 활용

나) 빈집밀집지역 전략

-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우선 정비사업 및 지역의 주거환경 정비

나. 철거계획

(단위 : 호, 백만 원)

구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이후 (2026년)	합 계
개소	22	37	38	38	58	193
금액*	210**	340***	380	380	580	1,890

※ 철거 예산 : 호당 평균 10백만 원

* 도시재생 외 1개 사업지 내 빈집은 해당 재생사업의 사업비로 철거예정으로 재원은 산정하지 않음

**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내 빈집 1호

*** 뉴딜사업(청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힐링마을 어서와 Young 성내) 내 빈집 1호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동정마을) 내 빈집 2호

다. 철거 후 활용계획

(단위 : 호, 백만 원)

구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이후 (2026년)	합 계
텃밭 등	개소	20	30	31	31	29	141
	금액	-	-	-	-	-	-
쌈지 주차장	개소	1	5	5	5	27	43
	금액	150	750	750	750	4,050	6,450
기타 (재건축 등)	개소	1	2	2	2	2	9
	금액	-	-	-	-	-	-

※ 쌈지주차장 조성비용 : 호당 최대 150백만 원(토지매입비 포함)

라.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단위 : 호, 백만 원)

구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이후 (2026년)	합 계
개소	13	40	80	80	131	344
금액*	10**	37***	80	80	131	338

※ 안전조치 및 관리 예산 : 호당 최대 1백만 원

* 도시재생사업지 내 빈집은 해당 재생사업의 사업비로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철거계획 예정으로 재원은 산정하지 않음

**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신촌마을) 1호, (조동마을) 1호

철거계획 :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신촌마을) 1호

*** 철거계획 :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동정마을) 3호

마. 빈집우선정비구역

(단위 : 호)

연번	행정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합 계
○ 1	고성읍 수남리	1	1	4	6	12
○ 2	고성읍 동외리	0	1	8	7	16
○ 3	고성읍 월평리	2	7	9	12	30
○ 4	하일면 수양리	4	12	1	2	19
○ 5	하일면 학림리	4	7	8	6	25
○ 6	하이면 월흥리	2	4	14	2	22
○ 7	상리면 척번정리	4	5	3	1	13
○ 8	상리면 무선리*	6	9	2	1	18
○ 9	대가면 송계리	2	3	7	4	16
○ 10	대가면 유흥리	4	1	7	4	16
○ 11	영현면 봉발리	8	7	4	2	21
○ 12	영오면 영대리	1	2	7	2	12
○ 13	영오면 양산리	2	6	15	1	24
○ 14	개천면 봉치리	1	2	7	1	11

연번	행정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합 계
○ 15	구만면 주평리	1	5	7	3	16
○ 16	구만면 화림리	4	6	7	3	20
○ 17	구만면 저연리	3	7	4	0	14
○ 18	마암면 화산리	0	7	8	3	18
○ 19	마암면 도전리	1	7	5	2	15
○ 20	동해면 장좌리	4	2	15	9	30
○ 21	거류면 가려리	2	3	9	4	18
○ 합 계		56	104	151	75	386

※ 상리면 무선리 경계와 인접한 망림리에 있는 빈집 6호를 무선리 빈집우선정비구역에 포함하여 지정

바. 자원조달계획

- 1) 철거계획: 호당 평균 10백만 원
- 2) 철거 후 활용계획: 호당 최대 150백만 원
- 3)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호당 최대 1백만 원
- 4) 기타
 - 빈집(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의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고성군 고시 제2022-136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7. 20.

고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변경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민원봉사과(☎055-670-217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고성읍 이당리 50-2	고성읍 이당1길 255	2022.07.2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고성읍 이당리)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2	거류면 감서리 644-1	동해면 동해로 759	2022.07.2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동해면)을 이용하여 동해로로 명명	
3	영현면 영부리 135-4	영현면 영부1길 78-1	2022.07.2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영현면 영부리)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4	상리면 동산리 852	상리면 삼상로 1305-35	2022.07.2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삼천포+상리면) 반영	
5	하이면 석지리 382-4	하이면 석지5길 55-5	2022.07.2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하이면 석지리)을 이용하는 다섯번째 도로	
6	대가면 연지리 807-5	대가면 연지2길 99-85	2022.07.2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대가면 연지리)을 이용하는 두번째 도로	
7	회화면 배둔리 543-4	회화면 회진로 105-3	2022.07.2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회화면 진전면) 활용	
8	회화면 배둔리 543-4	회화면 회진로 105-4	2022.07.2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회화면 진전면) 활용	
9	회화면 배둔리 543-4	회화면 회진로 105-5	2022.07.2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회화면 진전면) 활용	
10	동해면 내산리 197	동해면 내산2길 96-3	2022.07.2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동해면 내산리)을 이용하는 두번째 도로	
11	하이면 봉원리 247	하이면 봉원1길 305-27	2022.07.2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하이면 봉원리)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12	하이면 덕호리 115	하이면 덕호5길 42	2022.07.2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하이면 덕호리)을 이용하는 다섯번째 도로	
13	마암면 삼락리 619	마암면 삼락2길 78	2022.07.2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마암면 삼락리)을 이용하는 두번째 도로	
14	동해면 외산리 286-15	동해면 외산로 452	2022.07.2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동해면 외산리)을 이용하여 외산로로 명명	
15	마암면 석마리 408-1, 410-3	마암면 석마2길 96	2022.07.2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마암면 석마리)을 이용하는 두번째 도로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관할구역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비고
1	상리면	삼상로 1305-35	2022.07.20.	건물신축을 위한 건물 멸실	
2	하이면	석지5길 55-5	2022.07.20.	건물신축을 위한 건물 멸실	

